

## 2.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

법률 제5,525호 1998. 2. 24.

###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 
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운용시기를 2002년으로 앞당기는 한편, 한국증권업협  
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 
제외하도록 함(법 제18조의3, 법률 제5418호 부칙 제1조 및 제8조의2).

〈법제처 제공〉

### 주 요 내 용

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4조제1항중 “제18조의3제3항”을 “제15  
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  
인 및 제18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3제3항제1호중 “주권상장법인 또  
는 협회등록법인”을 “주권상장법인”으로  
한다.

법률 제5418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

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, 동부칙에 제8조  
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지급이자 손금부개입에 관한 적  
용례) 제18조의3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 
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 
적용한다.

### - 부 칙 -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